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원시자료 공개 알림

2020. 1. 9.(목)

질 병 관 리 본 부
만 성 질 환 관 리 과
지 역 사 회 조 사 팀

1 지역사회건강조사 소개

□ 조사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2008년부터 전국조사 실시)

* 시행근거:「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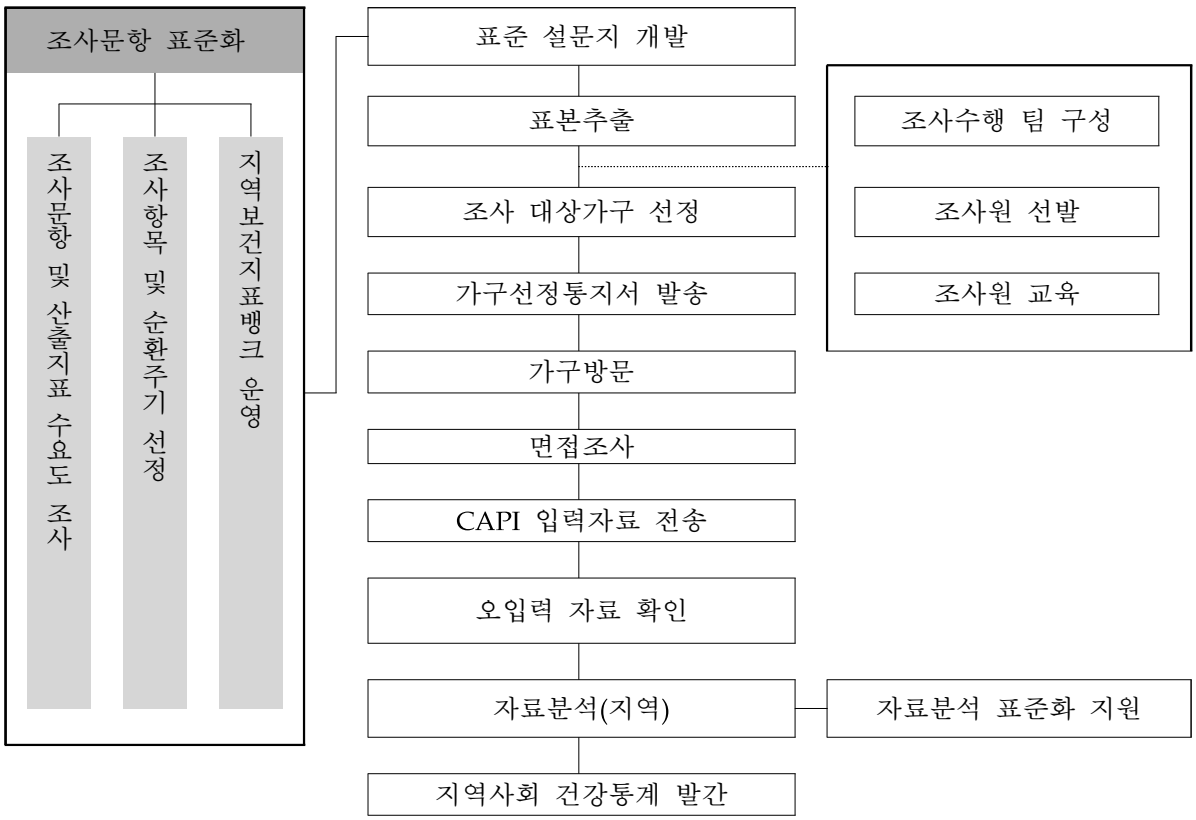
○ 조사기간 : 매년 실시(8.16.-10.31., 2.5개월)

○ 조사방법 :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표본선정과정

모집단정의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분석 및 층화		동/읍·면, 주택유형별 층화
표본 배분	표본크기 결정	보건소별 평균 900명, 목표오차 ±3%
	동/읍면 할당	동/읍·면 1개 우선 배정 후 비례배분 및 주택유형은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지점 할당
표본 추출	표본지점 추출	1차 추출, 통·반/리 확률비례계통추출
	표본가구 추출	2차 추출, 계통추출

○ 조사수행


조사문항 표준화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도 조사
조사항목 및 순환주기 선정
지역보건지표뱅크 운영
표준 설문지 개발
표본추출
조사 대상가구 선정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가구방문
면접조사
CAPI 입력자료 전송
오입력 자료 확인
자료분석(지역)
지역사회 건강통계 발간
조사수행 팀 구성
조사원 선발
조사원 교육
자료분석 표준화 지원

○ 조사내용

영 역			조사항목	문항 수	지표 수
총 계				226	170
설문조사	개인조사	흡연	평생흡연, 흡연시작연령, 현재흡연, 금연기간, 금연시도, 금연계획, 간접흡연, 금연캠페인, 금연교육 경험 등	40	29
		음주	평생음주, 음주시작연령, 음주시작동기, 음주빈도, 음주량, 절주 및 금주시도, 음주폐해 등	12	11
		안전의식	안전벨트 착용(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 등	14	10
		신체활동	신체활동 실천, 걷기 실천, 유연성운동 및 근력운동 실천	8	6
		식생활	아침식사 횟수, 저염선호, 영양표시 인지·해독·활용	7	6
		비만 및 체중조절	본인 인지 체형, 체중조절 경험	2	2
		구강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칫솔질, 치과진료 미치료 등	8	8
		정신건강	스트레스 및 우울감, 정신상담, 우울증상유병, 수면의 질, 치매 및 인지장애, 도박 등	25	17
		예방접종 및 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진	3	3
		이환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 건강정보이해능력, 고혈압, 당뇨병 등	41	29
		의료이용	미충족의료 경험, 미충족의료 이유	2	2
		사고 및 중독	사고중독 경험 및 건수, 사고중독 원인, 낙상 경험 및 치료 등	8	8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삶의 질 지수, 행복감지수, 침상와병, 결근결석	11	7
		보건기관이용	보건기관 이용	1	1
		사회 물리적 환경	현재 체감 환경,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거주기간, 사회적연결망 등	16	7
		개인위생	손 씻기 감염병 예방 인지 여부, 식사 전 손 씻기 실천 여부 등	6	6
		여성건강	현재 월경 여부	1	1
		교육 및 경제활동	직업 및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및 최종학력, 혼인상태	6	3
		혈압측정 기초설문	현재부터 30분 이내 활동	1	0
		신체계측 사전설문	본인인지 키, 몸무게, 현재 임신 여부	1	1
	가구조사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 소득, 가구 식생활 형편, 다문화 가구, 치매환자 동거여부 등	13	13
계측조사	혈압측정(시범조사)		혈압 측정(3회)		
	신체계측		키(1회), 몸무게(1회)		

2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원시자료 공개

□ 공개 배경 및 목적

○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매년 254개 보건소에서 약 23만건의 자료 수집**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1] 공개

□ 그간 공개 경과

○ 2012.01.04.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년, 2009년 원시자료 공개
○ 2012.12.14.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년 원시자료 공개
○ 2014.01.03. 지역사회건강조사 2011년, 2012년 원시자료 공개
○ 2015.01.16.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원시자료 공개
○ 2016.01.29.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원시자료 공개
○ 2017.01.26.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자료 공개
○ 2018.01.09. 지역사회건강조사 2016년 원시자료 공개
○ 2019.11.28.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원시자료 공개

1)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된 “공공이용 원시자료”를 의미하며,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된 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을 준수하여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삭제된 익명화된 자료

□ 공개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원시자료**

- (지역구분) 전국 및 광역 시·도로 구분
- (파일형식) SAS 및 텍스트 데이터셋
  * 전국 기준 228,340건, 280개 변수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제공형태) PDF 파일
- (주요내용)
  - 자료구조, 자료정제, 자료구성, 자료특성
  - 지표정의 및 변수생성 프로그램
  - 조사문항에 따른 변수, 변수라벨, 코드 및 코드명
  -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 공개 대상 및 공개일

○ 공개대상 : **제한 없음**

○ 공 개 일 : **2020년 1월 13일(월)**

□ 신청절차 및 자료활용 등록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원시자료 이용 및 논문 개재, 연구발표 등의 자료활용에 대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 등록

○ 신청절차 및 자료활용 등록

서약서 및 이용계획서 제출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서 서약서 및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제출
⇩	⇩
내부 심의	◦ 심사내용 : 제공자료를 이용한 이용계획서 검토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
원시자료 제공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	⇩
자료활용 등록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논문 개재 및 연구발표 등의 현황을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에 등록

<붙임>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2.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4호
개정 2012. 1.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4호
개정 2012. 9.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5호
개정 2016. 1.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8.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료”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2. “원시자료”란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된 자료로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조제2호가목의 통계기초자료를 말한다.
3.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삭제된 익명화된 자료를 말한다.
4.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 중 공공이용 원시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5. “산출물”이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해당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작성 및 공개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이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제공 범위 등

제4조(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1. 법정감염병 감시자료(2001～)
2.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
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5～)
4. 퇴원손상심층조사(2005～)
5.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1997, 2005)
6. 지역사회건강조사(2008～)
7. 급성심장정지조사(2012～)

제5조(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이때 제공 가능한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제6조(원시자료의 이용청구) ①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2. 제4조제2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등록
3. 제4조제3호의 경우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 등록
4. 제4조제4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5. 제4조제5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6. 제4조제6호의 경우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등록
7. 제4조제7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②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주체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이용자가 제6조제3항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
2.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5.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
6.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제9조(산출물의 제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시자료 및 출처의 표기)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 등에 이용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4장 자료제공 제한

제12조(원시자료의 제공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장 자료제공 방법 등

제13조(원시자료의 제공방법)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제4조제1항 각 호 소관부서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2.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4조(원시자료의 제공비용) ① 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경비 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통계법 시행령」제47조제5항에 따라 그 소요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